

• 21세기 미래문화도시 • 더불어 행복도시 • 사람중심 열린도시



연수구보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333호 2022. 10. 6.(목)

【조 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42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43호(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35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44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45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46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63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47호(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69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48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79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49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50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88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51호(인천광역시 연수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94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52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 98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53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03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54호(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08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55호(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112

회							
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위임입법의 범위에 맞도록 정비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제3조의2, 제3조의3, 제6조 등) ○ 상위법에 이미 규정된 사항 중 조례에서 중복 규정하는 사항 삭제 ○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제11조, 제25조, 제3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국유재산법」과의 용어통일성을 기하고 수익에 대한 포괄적 해석 방지 등을 위해 “사용·수익”을 “사용”으로 일괄 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도 “사용·수익”을 “사용”으로 수정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0.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42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모든”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의 모든”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으로, “구성한다” 를 “둔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연수구청 소속 국장급 이상” 을 “위원회의 위원은 연수구 소속” 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위원장은” 을 “위원회의 위원장 은” 으로, “민간위원 부위원장” 을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으로, “호선으 로 선정한다” 를 “호선한다” 로 한다.

제3조의3을 제3조의4로 하고, 제3조의2, 제3조의4, 제3조의5 및 제4조를 각각 제3조의3, 제3조의5, 제4조 및 제3조의2로 한다.

제3조의2(종전의 제4조)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을 “(심의회의 기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심의회” 를 “심의회”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장가액” 을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으로 한다.

제3조의3(종전의 제3조의2)의 제목 “(위원의 임기 등)” 을 “(위원의 임기)”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연임” 을 “한 차례만 연임” 으로 한다.

제3조의4(종전의 제3조의3)제2항 중 “공무원 부위원장이” 를 “공무원인 부위원장이 그” 로 한다.

제3조의5(종전의 제3조의4)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을 “(심의회의 운영)” 으로 한다.

제3조의6을 삭제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의5)제1호 중 “심신장애로” 를 “질병 또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연수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의” 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실태조사에”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타인” 을 “다른 사람”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0조” 를 “법 제10조의2” 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규칙이” 를 “규칙으로” 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사용·수익” 을 “사용” 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 을 “(사용허가의 제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허가시” 를 “허가 시”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을 “사용” 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사용·수익허가)” 를 “(사용허가)”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허가” 를 “사용허가” 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 을 각각 “사용” 으로 한다.

제19조의2 제목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를 “(수의계약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사용·수익” 을 각각 “사용” 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를 “(사용 허가부의 비치)”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을 “사용” 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재산을관리” 를 “재산의 관리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관리 수탁” 을 각각 “관리수탁” 으로, “사용·수익” 을 “사용” 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관리 수탁” 을 “관리수탁” 으로, “수탁” 을 “관리수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 수탁” 을 “관리수탁”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의 규정에” 를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로, “년수” 를 “연수” 로 한다.

제22조 중 “기타 사용수익” 을 “그 밖의 사용” 으로 한다.

제25조 중 “제2조제8항” 을 “제2조제9항” 으로 한다.

제26조제3호 중 “설립승인” 을 “설립 승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 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로 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전통시장 상점가에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를 “(전통 시장 및 상점가에 사용허가 및 대부)”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수구” 를 “구” 로, “사용·수익” 을 “사용”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전단 과 후단 중 “사용·수익” 을 각각 “사용” 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을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30명이상” 을 “30명 이상” 으로, “당해 지역내” 를 “그 지역 내” 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 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이”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 를 “감정평 가법인등” 으로, “기타” 를 “그 밖에” 로, “관하여 참고” 를 “참고” 로 한 다.

제30조제2항 단서 중 “건축법” 을 “「건축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 1호 및 제2호 중 “산식해당”,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를 각각 “산식 : 해당”, “대부” 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으로, “사용·수익” 을 “사용” 으로, “이하 이 조에서” 를 “이하”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 을 “각 목” 으로, “대부료 등” 을 “대부료등” 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일평균” 을 “1일 평균” 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 “각목” 을 “각 목” 으로, “대부료 등” 을 “대부료등” 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부료 등” 을 “대부료등”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일평균” 을 “1일 평균” 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제26조의제1호 부터” 를 “제26조제1호부터” 로 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17조제6항” 을 “영 제17조제6항제1호” 로, “사용·수익” 을 “사용” 으로, “시행령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 를 “시행령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부료 등” 을 “대부료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2호에 따라 사용·수익” 을 “제22호, 제23호에 따라 사용” 으로, “제25호” 를 “제25호, 제26호” 로, “대부료 등” 을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등” 으로 한다.

제31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17조제6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⑦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을 “사용”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세입세출” 을 “세입·세출” 으로, “사용·수익” 을 “사용”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 을 “다만,” 으로, “예금중도 해지” 를 “예금 중도해지”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대부료등에 관한 조정)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보다 대부료등(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등)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4조(대부료등의 납부기한)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의 납부기한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으며,이” 를 “같으며, 이” 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다음의 “제3절 신탁” 을 삭제한다.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44조제2항 중 “따라” 를 “따른” 으로, “우선 순위” 를 “우선순위” 로, “도괴” 를 “붕괴” 로 한다.

제45조 단서 중 “참작” 을 “고려” 로, “『건축법』 상의” 를 “「건축법」에 따른” 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증·감등” 을 “증감 등” 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공원화된” 을 “공원화 된” 으로 한다.

제47조 중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를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49조 제목 “(정의)” 를 “(관사)”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에서 “관사” 라 함은” 을 “장에서 “관사” 란” 으로 한다.

제50조제2호 중 “관사 및 이에 준하는” 을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을 “시설관리사 등의 관사” 로 한다.

제52조제4호 중 “제공과금” 을 “제제공과금” 으로 한다.

제54조제3호 중 “게을리 하여” 를 “게을리하여” 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변상금 징수의 유예) ①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납부할 변상금과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3. 유예신청 사유와 기간

제63조제1항 중 “그 보상” 을 “보상”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에 대하여” 를 “사람에게” 로, “10상당액으로 한다” 를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호” 를 “제1호” 로, “기타” 를 “그 밖의” 로, “자에 대하여” 를 “사람에게” 로, “5상당액으로 한다” 를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반환자에 대하여” 를 “반환자에게” 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자인 경우에” 를 “사람에게” 로 한다.

제64조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65조 전단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를 “감정평가법인등에” 로 한다.

제67조 중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2항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 ----- -----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 필 <u>요</u> ----- -----.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 ----- 둔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연수구청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연수구 소속 ----- ----- ----- -----, ----- -----.

1. ~ 3. (생 략) ④ <u>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u>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 되, <u>민간위원</u> 부위원장은 심의회 에서 <u>호선</u>으로 선정한다. <u>제3조의2(위원의 임기 등)</u> <u>위원의</u>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임할</u>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u>위원의</u> 임 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한다. <u>제3조의3(위원장의 직무 등)</u> ① (생 략) ② <u>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u>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u>공무원</u>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 한다. <u>제3조의4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u> ① ~ ⑤ (생 략) <u>제3조의5(위원의 해촉)</u> <u>구청장은</u> <u>심의회</u> <u>위원이</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u>위원회의 위원장</u>----- -----, ----- ----- ----, <u>민간위원인</u>----- ----- <u>호선</u>-----. <u>제3조의3(위원의 임기)</u> ----- -----, <u>한 차례만</u> <u>연임</u>-----, ----- ----- -----, ----- -----. <u>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 등)</u> ① (현행 제3조의3제1항과 같음) ② ----- ----- <u>공무원인</u> ----- <u>그 직무</u>-- -----. <u>제3조의5 (심의회의 운영)</u> ① ~ ⑤ (현행과 같음) <u>제4조(위원의 해촉)</u> ----- ----- ----- ----- -----.
---	---

1. <u>심신장애로</u>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 3. (생 략)	1. <u>질병 또는 일신상의 사유로</u> 인하여 ----- 2. ~ 3. (현행 제3조의5제2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u>제3조의6(실비보상)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	<삭 제>
<u>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u> (생 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u> 생략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u>대장가액 1억원 이하(특별시·광역시 지역 이외는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u>	<u>제3조의2(심의회의 기능) ①</u> (현행 제4조제1항과 같음) ② ----- ----- ----- <u>심의회의 심의를</u>----- -----. 1. ~ 2. (현행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와 같음) 3. <u>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u> ----- -----
<u>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연수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제7조(실태조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생 략)

④ (생 략)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제7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각 호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실태조사에 -----

③ -----
----- 각 호 -----

-----, -----

-----.

1. ~ 3. (현행과 같음)

4. 다른 사람-----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

--- 연수구의회-----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 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 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의 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생 략)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 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생 략)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u>규칙</u>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 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 조에 따른 <u>공유재산관리 계획서</u> 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 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u>사</u> <u>용·수익</u>허가대상 재산은 기부 채납된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하여서는 유상사용 허 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 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규칙</u> <u>로</u> -----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 <u>공유재산 관리계획서</u> -----. 제15조(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 ----- <u>사</u> <u>용</u>----- ----- -----. ② (현행과 같음)
--	--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

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생략)

제19조의2(수익계약으로 사용·수

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 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

-----, 해당-----

----- 허가 시-----

② -----

-- 사용-----
-----.

제19조(사용허가) -----

- 사용허가-----
-----.

1. ~ 4. (현행과 같음)
5. 사용-----
--
6. 사용-----

7.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수익계약으로 사용을 허

가할 수 있는 경우) -----

-----.

1. -----

여 <u>사용·수익</u> 을 허가하는 경우	-- <u>사용</u> -----
우	--
2.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2. -----
구유 행정재산의 운영을 위해	-----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
<u>사용·수익</u> 을 허가하는 경우로	<u>사용</u>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20조(<u>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u>)	제20조(<u>사용 허가부의 비치</u>) ----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	-----
의 <u>사용·수익</u> 허가부를 비치하	- <u>사용</u> -----
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생략)	(현행과 같음)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② -----
<u>행정재산을관리</u> 위탁받은 자(이	---- <u>재산의 관리</u> 를 -----
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	-----
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	-----
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	-----
과·징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	③ ----- 관
리 수탁자가 <u>사용·수익</u> 허가 받	<u>리수탁</u> ---- <u>사용</u> -----
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	-----
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	--, -----

는 관리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 관리수탁-----

----- . -
----- 관리수탁-----
----- 관리수탁-----
-----.

④ -----

-- 관리수탁-----

-----.

⑤ -----

----- 해당 -----

--.

⑥ ----- 제4항까지의 규
정에도 -----연수---

-----.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 -----
----- 그 밖의 사용-----

제36조를 준용한다.	-----.
제25조(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 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 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 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5조(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 ----- ----- ----- ----- -,-----제2조제9항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 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매각 대상 등)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u>설립승인</u> 된 지역의 공유재산	3. ----- ----- <u>설립 승인</u> 된 -----
4. 「 <u>외국인투자촉진법</u>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 유재산	4. 「 <u>외국인투자 촉진법</u> 」 제18조- ----- ----- ---
5. ~ 6. (생략)	5. ~ 6.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u>전통시장 상점가에 사 용·수익허가 및 대부</u>) ① 「전통	제26조의2(<u>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사용허가 및 대부</u>) ① -----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연수구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

-----구-----
-----사용-----

-----.

② -----사용-----
-----사용-----

-----사
용-----
-----.

③ -----사용-----
-----사
용-----
-----사용-----
-----.

-----사용-----

-----.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 2. (생략)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생략) 1. ~ 5. (생략)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종업원 <u>30명 이상</u>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u>당해 지역내</u>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 9. (생략) 제29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u>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u>」제2조제4호에	----- -. 1. ~ 2. (현행과 같음) 3.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 ----- ----- -- ④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 ----- ----- <u>30명 이</u> <u>상</u>----- ----- <u>그 지역 내</u>----- ----- ----- 7. ~ 9. (현행과 같음) 제29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 ----- ----- ----- ---- <u>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u> (「<u>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u>
---	--

다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3항의 가격평정 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 시가 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감정평가법인등-----, -----
-----, 그 밖에 ----- 참고-----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건축법」-----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해
 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
· 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
 의 건물 전용 면적 / 해당 건
 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해
 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
· 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
 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생 략)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
 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
 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
 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 나. (생 략)

다. 1일평균 고용 인원이 300

1. ----- 산식 :
해당----- 대
 부 -----

2. ----- 산식 :
해당----- 대
 부 -----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
 면) ① -----제
13조의2제3항-----

 ----- 사용-----
 -----이하

 -----.

1. ---- 각 목 -----
 ----- 대부료등-----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1일 평균 -----

명 이상인 사업 라. ~ 바. (생략)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대부료</u>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 마. (생략)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u>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u>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대부료</u>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u>1일평균</u>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 마. (생략)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u>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u>	----- 라. ~ 바. (현행과 같음) 사. ----- ----- ---- 「<u>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u>」에 따라 ----- 2. ---- 각 목----- ----- <u>대부료</u>등-----.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 ----- 「<u>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u>」에 따라 ----- 3. ----- ----- <u>대부료</u>등-----. 가. (현행과 같음) 나. <u>1일 평균</u> ----- ----- 다. ~ 마. (현행과 같음) 바. ----- ----- 「<u>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u>
--	--

<u>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u>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u>제26조의제1호</u> 부터 제3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생 략) 1. (생 략) 2. <u>기타</u>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u>영 제17조제6항</u> 및 제29조제 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 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 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 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 게 <u>사용·수익</u>허가 또는 대부 하 는 경우, 같은 법 <u>시행령 제17조</u> <u>제7항제2호</u> 및 제35조제2항제2 호에 따라 <u>대부료</u> 등을 30퍼센 트 감면할 수 있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 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 을 대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제2호에 따라 <u>대부료</u> 등 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⑤ 영 제13조제3항제21호, <u>제22</u>	<u>에 관한 법률」에 따라</u> --- ----- 사. <u>제26조제1호부터</u> ----- -----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그 밖의</u> ----- : ----- ③ <u>영 제17조제6항제1호</u> ----- ----- ----- ----- ----- --- <u>사용</u>----- ----- <u>시행령 제17조</u> <u>제7항제1호</u> 및 제35조제2항제3 <u>호</u>----- <u>대부료</u>등----- -----. ④ ----- ----- ----- ----- ----- ----- <u>대부료</u>등 -----. ⑤ -----, <u>제22</u>
---	--

호에 따라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
호, 제20호, 제25호에 따라 대부
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50퍼센
트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호, 제23호에 따라 사용-----
-----,
-----, 제25호, 제26호-----
-----,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
료등-----.

⑥ 영 제17조제6항제3호 및 제3
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의 귀
책사유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
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부
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⑦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
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
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
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
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
는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
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
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
다.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 사용-----,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세입·세출-----

----- 사용---

---,-----

----- 다만,

----- 예금 중도해지-----

-----.

④ -----

----- 「지방자치

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33조(대부료등에 관한 조정)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

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4조(대부 또는 사용료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10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보다 대부료등(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등)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4조(대부료등의 납부기한) 공유

재산의 대부료등의 납부기한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3. 3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삭 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
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
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
다.

1. ~ 4. (생 략)

제39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
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 제2
3호에 의한 수익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제3절 신탁

제38조(조성원가 매각) -----

같으며, 이 -----

-----.

1. ~ 4. (현행과 같음)

제39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
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청사 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
과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
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
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
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
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
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
로 설계

2. ~ 6. (생략)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
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
----- 우선순위----- 불
과-----
-----.

제45조(청사의 부지) -----

-----.
-----,

----- 고려-----
『건축법』에 따른 -----
-----.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

-----,
----- 각 호-----
-----.

1. ----- 증감 등

2. ~ 6. (현행과 같음)

7. ----- 공원화 된 ----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

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 -----.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 부구청장, 시설관리사 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9조(관사) -- 장에서 “관사”란 -----, -----, ----- ----- -----.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생략) 2. 2급 관사 :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50조(관사의 구분) ----- -----. 1. (현행과 같음) 2. ----- : -----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 ----- 3. ----- : 시설관리사 등의 관사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2조(사용책임)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제세공과금 -----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
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라 사
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
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생략)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
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
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
해 점유자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
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

-----.

1. ~ 2. (현행과 같음)

3. -----

게을리하여 -----

4. (현행과 같음)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

----- 해당

-----.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삭 제>

분납

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

내 분납

② (생략)

<신설>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의3(변상금 징수의 유예) ①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납부할 변상금과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3. 유예신청 사유와 기간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 보상

--, -----

-----.

1. -----

사람에게-----

의 100분의 <u>10상당액</u>으로 한다. 가. ~ 나. (생 략) 2. <u>1호</u>의 경우를 제외한 <u>기타</u> 재산을 신고한 <u>자</u>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u>5상당액</u>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u>자인</u>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생 략) 제64조(합필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u>당해</u>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 <u>10에</u>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2. <u>제1호</u>----- <u>그</u> 밖의 ----- <u>사람에게</u>----- ----- <u>5에</u>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u>반환자에게</u>----- ----- . -----, ----- ----- - <u>사람에게</u>----- -----. ④ (현행과 같음) 제64조(합필의 신청) ----- ----- ----- ----- <u>해당</u> ----- ----- -----.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 ----- -----
--	---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u>당해</u>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u>당해</u>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u>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감정평가업자</u>에게 의뢰한다.	----- <u>해당</u> --- ----- ----- ----- ----- ----- ----- -- <u>감정평가법인등에</u>----- ---.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u>관하여</u> <u>필요한</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시행규칙) ----- <u>필요</u>-----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신설 ○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현행규정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등 정비 2. 주요내용 ○ 조례 위임사항 신설(제35조, 제36조)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제4조, 제17조) ○ 현행규정 보완 및 정비(제1조, 제4조, 제8조 등)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제명, 제2조, 제3조, 제5조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0.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43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을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를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하며, 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타 출납보관”을 “그 밖의 출납 또는 보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2조 및 제75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 중 “의한다”를 각각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31일에 종료한다”를 “31일까지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물품매입등의 요구)”를 “(물품매입 등의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관 과장”을 “각 부서 및 기관(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주관과장”을 “각 부서 및 기관의 장”으로, “물품 관리관”을 “물품관리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매입토록하여야”를 “매입토록 하여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중 “규칙이”를 각각 “규칙으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주관부서”를 “각 부서 및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규칙이”를 각각 “규칙으로”로 한다.

제12조 중 “결정 하였을”을 “결정하였을”로 한다.

제14조제2호 본문 중 “액. 다만”을 “금액.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등재후”를 “등재 후”로, “물품의 관리관”을 “물품관리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물품은”을 “물품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의”로,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긴급처분을 요하는”을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내구연수”를 “그 밖에 내구연수”로 한다.

제17조제3항제2호 중 “2이상”을 “둘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78조제2항”을 “영 제78조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사업소장, 동장”을 “동장”으로, “기타”를 “또는 그 밖에”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을 “따른 장부”로,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를 “갖춰 놓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추 놓을 수 있다.

제25조 중 “매 년”을 “매년”으로 한다.

제26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검사 및 인계

제29조제1항 중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따른”을 “따라”로, “물품출납”을 “물품출납원”으로, “보건소장, 사업소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31조 중 “경질” 을 “교체” 로, “발령일로부터” 를 “발령일부터” 로 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인계전일” 을 “인계 전일” 로, “연월일” 을 “연월일을” 로, “인계인수” 를 “인계·인수” 로 한다.

제33조 제목 “(타직원에 의한 인계)” 를 “(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를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로, “사업소장, 동장” 를 “동장” 으로, “자로 하여금” 을 “사람에게” 로, “처리하게” 를 “처리하도록” 으로 한다.

제34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35조를 제37조로 하고,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무상대부) 영 제75조제4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연수구민으로 하며, 물품의 대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36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u> 제2조(관리책임) ① (생략)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u>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u>")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u>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u> ② (생략) 제4조(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u>」 제52조 및 제75	<u>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u> 제1조(목적) -----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u>」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u>인천광역시</u> ----- ----- <u>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u> -----. 제2조(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u>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하며, 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u>)을 지정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 -----, -----, -----, -----, <u>그 밖의 출납 또는 보관</u>-----.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사무의 위임) -----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u>」 제52조 -----

조에 따라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운영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 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 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

-----.

제5조(물품의 분류) -----, -----
----- 따른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
----- 따른다.

제7조(연도구분) ① -----
----- 31일까지로 한다.

② -----

----- 따른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

--- 각 부서 및 기관(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 규칙으로 -----

----- <단서 삭제>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각 부서 및 기관의 장-----
----- 물품관리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

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
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
하여 물품을 매입토록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 (생략)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
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
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
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
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
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즉시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
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
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 분
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
실을 보고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
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
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
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

----- 매입토록 하여야 -----.

제10조(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 규칙으로 -----
-----.

③ -----
-----, -----,
-----, -----

----- 규칙으로
-----.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
----- 각 부서
및 기관-----

규칙으로 -----
-----.

② -----

----- 규칙으로 -----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생 략)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사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 6. (생 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의 관리관이 정하는 추정 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은 이월 출납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구청장의 결

-----.

제12조(분류전환) -----

결정하였을 -----
-----.

제14조(물품의 가격) -----
-----.

1. (현행과 같음)

2. -----
----- 금액. 다만, -----

3. ~ 6. (현행과 같음)

7. -----
----- 등재 후

----- 물품관리
관-----

제15조(잔품의이월) -----
----- 물품에 대하여는 -----

-----.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

-----, -----, 그 밖의 -----
----- 규칙으로 -----

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1. ~ 8. (생략)

② (생략)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 4. (생략)

5. 기타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생략)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 4. (생략)

④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다.

⑤ ~ ⑧ (생략)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 -----

-----.

1.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내구연수-----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둘 이상 -----

3. ~ 4. (현행과 같음)

④ -----
----- 영 제78조제4항-----.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
--- 각 호-----
----- 규칙으로 -----

-----.

②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한다.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생략)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소모품 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2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② ----- 따른 -----

-----.

③ -----
----- 본다.

제21조(일시보관) ① -----

-----, -----
--, 동장 -----
-- 또는 그 밖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
----- 규칙으로 -----

-----.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추 놓을 수 있다.

③ ----- 따른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같음한다.

제25조(장부의 작성)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 (생략)

<신설>

제29조(물품검사서) ①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물품 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

----- 갖춰 놓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이를 같음할 수 있다.

제25조(장부의 작성) -----
----- 매년 -----
----- . -----, -----

-----.

제26조 (현행과 같음)

제4장 검사 및 인계

제29조(물품검사서) ①-----

----- 규칙으로 -----
----- 따라 -----
----- 물품출납원 -----
-----, 보건소장,-----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
----- 교체-----
----- 발령일부터-----
-----.

제32조(인계의 절차) -----
----- 인계 전일-----
----- 연

월일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 하여야 한다.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
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
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
는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보
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
게 하여야 한다.

제34조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35조 (생 략)

월일을 ----- 인계·인수-----
-----.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
-----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
로 -----
-----,
-----, 동장 -----
----- 사람에게
----- 처리하
도록 -----.

제34조 (현행과 같음)

제5장 보칙

제35조(무상대부) 영 제75조제4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관 물품
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는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연수구민
으로 하며, 물품의 대부에 관한 세
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36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구청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
재액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
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 (현행 제35조와 같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연수구청사 및 의회·별관의 시설물 현행화 ○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 정비 ○ 사용료 반환절차, 대관심의회 규정 등 현행규정 보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등 정비 2. 주요내용 ○ 연수구청사 및 의회·별관의 시설물 현행화 및 정비 - 연수아트홀, 체육시설 정비 (제3조, 제4조, [별표]) ○ 사용료 반환절차, 대관심의회 규정 등 현행규정 보완 - 연수구청 별관 건립에 따른 시설물 정의 정비(제2조) - 사용료 반환의 근거가 되는 준용규정 변경(제10조) - 대관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삭제(제11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제5조, 제6조, 제10조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0.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44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2조 제목 “(용어의 정의)” 를 “(정의)”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구내시설물”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 본청과 별관의 시설물”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조” 를 “제1호” 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적용 범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대상 시설물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 청

사시설물”을 “시설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예식”을 “교육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연수아트홀, 대회의실 및 그 부속실”을 “대회의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3. 교육시설 : 북카페, 배움실(별관), 동아리실(별관)

4. 전시시설 : 송죽원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배움실(별관)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사라”를 “사람”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개방시간”을 “사용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를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반환되지”를 “반환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없게된”을 각각 “없게 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4일전”을 “4일 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일전”을 “3일 전”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제43조, 제44조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 를,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 를,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7조를 제2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7조) 제목 “(타 법령과의 관계)” 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청사시설물의 사용 및 수장” 을 “시설물의 사용” 으로, “법령 및 조례” 를 “조례” 로 한다.

제18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물 사용시간 및 요금표

1. 대 관 료

시설명	용도	사용시간	사용료	기준	비고
연 수 아트홀	문화예술행사 등 공연 및 발표회, 기념행사, 강연회 등	09:00 ~ 21:00	80,000원	1시간	• 공연 연습 등을 위한 사전준비 사용 시 사용료의 50% 감산 • 18:00 이후 20% 가산
대회의실	강연, 회의 및 토론회 등	09:00 ~ 18:00	50,000원	1시간	• 사전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 감산
송죽원	전 시	연중 (09:00 ~ 18:00)	무료		• 문화예술품 전시에 한함.

※ 일요일 및 공휴일은 대관 제외

※ 냉·난방비, 전기료, 부가가치세 별도

※ 기준시간외 초과시간은 30분 단위로 계산

2. 부대시설 등 사용료

시 설 명	용 도	사용시간	사용료	기 준	비 고
피아노	공연용 반주용	시설사용기간	10,000원	1회	조율비는 사용자 별도 부담
냉,난방비	냉난방	시설사용기간	연료시가	1시간	기준시간외 초과 시 30분 단위로 계산
전기료	동력, 전등, 전열	시설사용기간	한국전력공사 고시요금적용	1시간	기준시간외 초과 시 30분 단위로 계산

3. 시설 사용료

시 설 명	용도	사용시간	사용료	비고
북 카 페	시설이용	09:00 ~ 18:00	무료	

4. 교육 수강료

과 정 별	수강시간	수강료	기준	비고
평생학습 교양강좌	교양강좌 운영 공고안에 따름	좌 동 (과정별 상이)	좌 동	· 재료비(교재 등)는 본인부담
컴퓨터교육	1주 2시간	무료	2개월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청사 중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개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대상 시설물은 본 조례에서 제외한다.	제1조(목적) ----- ----- ----- ----- ----. <단서 삭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구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u>구내시설물</u> 중 제3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시설물의 사용”이란 제1조의 시설물을 대관, 시설이용, 교육수강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 5.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 뜻은 ----- --. 1.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별관의 시설물 -----. 2. ----- 제1호----- -----, -----, ----- -----. 3. ~ 5.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적용 범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

제17조(타 법령과의 관계) 청사시설
물의 사용 및 수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 청사시설물 중 사용을 허
가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관의 허
가는 제1호, 제2호, 제4호 시설물
에 한한다.

1. 공연, 발표회, 예식 : 연수아트
 홀 및 그 부속실
2. 회의시설 : 연수아트홀, 대회의
 실 및 그 부속실
3. 교육시설 : 어학실, 배움실, 평
 생학습강의실, 북카페 및 그 부속
 물
4. 전시시설 등 : 전시실, 송죽원
5. (생 략)
6. 체육시설 : 생활체육실, 헬스장

② 제3조제1항의 시설물 중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

대상 시설물은 이 조례를 적용하
지 않는다.

제2조의3(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물
의 사용 -----

조례-----

-----.

제3조(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 등)

① 시설물 -----

-----.

-----, -----, -----

-----, -----, -----

-----.

1. -----, -----, 교육 등 : -----

2. ----- : 대회의실

3. 교육시설 : 북카페, 배움실(별
관), 동아리실(별관)

4. 전시시설 : 송죽원

5.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

와 같다.

1. 어학실

2. 배움실

3. (생 략)

4. 생활체육실

5. 평생학습강의실

③ (생 략)

제4조(사용자 등의 자격) ① (생 략)

② 시설물을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식장 사용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랑, 신부 또는 그 직계가족 중
1명이 접수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
이 되어 있는 자

2. 구 산하 전 직원 및 그 직계가족

제5조(시설물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4
호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
라은 사용예정일 2개월 전 매월 1
일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
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
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

1. 배움실(별관)

<삭 제>

2. (현행 제3호와 같음)

<삭 제>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자 등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조(시설물 사용신청 및 허가) ①

----- 사
랍-----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 사용의 제한) ① 시설물 등의 사용은 별표에 따른 개방시간에 한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기타 구청장이 행정 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제8조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수강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 또는 수강할 수 없게된 경우

2. 구의 사정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 또는 수강할 수 없게된 경우

3. 시설물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않을 것을 개시일 4일전까지 신고한 경우

4. 시설물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않을 것을 개시일 3일전부터 전일까지 신고한 경우

5. (생략)

제6조(시설 사용의 제한) ① -----
----- 사용시간 -----.

② ----- 호의 어느 하나에 -----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

-----반환하지-----

-----.

1. -----
----- 없게 된 -----

2. -----
----- 없게 된 -----

3. -----
----- 4일 전-----

4. -----
----- 3일 전-----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③ 사용료 등의 반환 절차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제43조,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1조(대관심의회) ① 시설물 사용 신청시 합리적인 결정을 위하여 대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② 대관심의회의 심의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동 조례 및 허가조건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생 략)
3.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4. 기타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

② (현행과 같음)

③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삭 제>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
----- 호의 어느 하나에 -----
-----.

1. 제5조제3항에 따른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현행과 같음)
3. ----- 그 밖의 -----

4. 그 밖에 -----

제15조(입장 및 행위제한) -----

----- 호의 어느 하나에 -----

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u>기타</u> 구청장이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 <u>제17조(타 법령과의 관계) 청사시설</u> <u>물의 사용 및 수강에 관하여 다른</u> <u>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u> <u>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u> <u>적용한다.</u> <u>제1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u> <u>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 1. ~ 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에</u> ----- ----- ----- <u><제2조의3으로 이동></u> <u>제17조(규칙)</u> ----- <u>필요</u>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화재재난에 취약한 청각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대 내 화재감지기 설치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화재 발생 시 청각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각 표시기능 화재감지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제4조제1항제3호 신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0.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45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u>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u>
	<u>감지기</u>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모호한 규정 및 운영상 어려운 부분을 개선하고, ○ 주민자치교육을 사전 이수한 사람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나아가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제한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를 보다 폭넓게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개추첨 시 문제점 개선(제8조제1항) -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60퍼센트 이하, 40대 이하가 전체위원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40대 이하가 전체 위원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로 개정 - 각각의 모집 정원 미달 시 추첨 없이 선정하도록 함 ○ 주민자치위원 사전의무교육 삭제 (제8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0.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46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제2호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 추천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이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의 모집 정원 이내일 경우 추천 없이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40대 이하가 전체 위원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정원의 80퍼센트 이하 :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주민자치회 정원의 20퍼센트 이하 :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

제9조제6항 중 “제8조제6항제2호”를 “제8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분과위원회별”을 “분과위원회별 주민자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위원추첨위원회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60퍼센트 이하, 40대 이하가 전체위원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지역적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중에서 전체위원의 80퍼센트 이내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받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20 퍼센트 이내 ② 제1항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능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제8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위원추첨위원회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이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의 모집 정원 이내일 경우 추첨 없이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40대 이하가 전체 위원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정원의 80퍼센트 이하 :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주민자치회 정원의 20퍼센트 이하 :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 <삭 제>

③ ~ ⑤ (생략)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생략)

2. 예비후보자가 없거나 정원에 미달되어 충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⑦ ~ ⑨ (생략)

제9조(위원추첨위원회) ① ~ ⑤ (생략)

⑥ 추첨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후 해산하며, 제8조 제6항제2호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첨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생략)

② ~ ④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⑤ -----

-----, -----

-----,

-----.

1. (현행 제6항제1호와 같음)

2. -----

----- 제4항 -----
-----.

⑥ ~ ⑧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9조(위원추첨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제8조 제5항제2호 -----

-----.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현행과

② 위원은 추천 없이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에서 인정하는 주민자치 보수교육을 연 3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8조(회의 등)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생략)

2. 분과회의는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을 정원으로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같음)

② -----
----- . <후단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회의 등)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분과위원회별 주민자치회 -----
-----, -----
-----.

② ~ ⑦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10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를 폐지하여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부상 예방 및 생활쓰레기 수거 효율성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량제봉투 규격 변경(별표 4) - 별표 4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 중 <가정사업계용 봉투> 에서 · 가연성 125 ℓ (용량, 판매가격, 판매수수료) 삭제 · 가연성 90 ℓ (용량, 판매가격, 판매수수료) 신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0.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47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폐기물로써”를 “폐기물로서”로, “일반용봉투”를 “일반용 봉투”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봉투”를 “봉투의 판매”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일반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가정사업계용봉투”를 “일반용 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가정사업계용 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쓰레기”를 “종량제”로 한다.

제16조 제목 “(종량제봉투의 환불)”을 “(종량제 봉투의 환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종량제봉투”, “확인인증 스티커”를 각각 “종량제 봉투”, “전입자 종량제 봉투 인증스티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를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봉투”를 “봉투의 판매”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1. 대형폐기물: 별표 1의 스티커 판매금액
2. 연탄재와 재활용가능자원 및 별표 3에서 정한 품목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수거함에 배출한 폐소형전자제품: 수수료 없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를 “호의 어느 하나”로, “자”를 “사람”으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용봉투”를 “일반용 봉투”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4의 종량제 가정사업계용 봉투 중 용량이 90리터인 봉투

의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작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량제 가정사업계용 봉투의 제작 및 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 중인 125리터 종량제 가정사업계용 봉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제작하고,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 및 사용한다.

[별표 4]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제17조 관련)
〈 일 반 용 봉 투 〉

1.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구 분	5 ℓ	10 ℓ	20 ℓ	50 ℓ	75 ℓ
판매가격	210원	390원	750원	1,850원	2,780원
판매수수료	18원	35원	67원	166원	250원

2. 2025년도 이후

구 분	5 ℓ	10 ℓ	20 ℓ	50 ℓ	75 ℓ
판매가격	230원	440원	870원	2,170원	3,250원
판매수수료	20원	39원	78원	195원	292원

【주】 판매수수료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22.1.)”에 따라 판매수수료 요율은 봉투 가격의 9%로 책정하며, 판매 가격에 포함되어 있음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제17조 관련)

〈 가정사업계용 봉투 〉

(단위: 원)

종 류	용량(ℓ)	판매가격	판매수수료
가연성	30	2,010	180
가연성	60	3,980	358
가연성	90	5,940	534
불연성	30	2,320	208
불연성	60	4,210	378

※ 기존 제작된 가연성 125ℓ 봉투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판매가격: 8,250원, 판매수수료: 742원)

【주】 판매수수료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22.1.)”에 따라 판매수수료 요율은 봉투 가격의 9%로 책정하며, 판매 가격에 포함되어 있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가정사업계폐기물"이란 가내	수공업 등 사업 활동과 관련	----- 뜻은 -----.		
하여 소량으로 발생하는 폐기	물 또는 사업 활동과 관계없	1. -----		
이 이사, 집수리 등 일시적으	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이	-----		
조례에서 정하는 종량제 봉투	중 일반용봉투에 담아 정상적	----- 폐기물로서 --		
으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	을 말한다.	----- 일반용 봉투-----		
2. ~ 4. (생 략)		-----.		
5. "적환장"이란 생활폐기물, 무	단투기쓰레기 또는 도로 등에	2. ~ 4. (현행과 같음)		
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등의	이적과 기타 생활폐기물을 능	5. -----, --		
률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	하여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	----- 그 밖에 -----		
을 말한다.		-----.		
6.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	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	6. -----		
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	물 중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	지와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	-----		
		-----, ----		

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으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7. (생 략)

제10조(토지나 건물의 청결유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조치의 내용을 고려하여 1개월 이내의 조치기간을 주어야 하며,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자에게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2조(종량제 실시) ① ~ ② (생 략)

③ 종량제 실시 대상 폐기물의 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 방법 등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가격 또는 무게나 양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가격에 의한다.

----- 인
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7. (현행과 같음)

제10조(토지나 건물의 청결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그 밖의 ----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종량제 실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봉투
의 판매-----

-- 따른다.

제13조(종량제 봉투 등 종류·규격 및 용도)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가정사업계용봉투 등으로 구분한다.

② 쓰레기 봉투의 종류별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③ (생 략)

제16조(종량제봉투의 환불) ① ~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자가 신청시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별표 5의 범위에서 확인인증 스티커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확인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종량제봉투를 수거·처리해야 한다.

제17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제13조(종량제 봉투 등 종류·규격 및 용도) ① -----
일반용 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가정사업계용 봉투 ----
-----.

② 종량제 -----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종량제 봉투의 환불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종량제 봉투-----

-- 전입자 종량제 봉투 인증스�티커-----.

④ ----- 전입자 종량제 봉투 인증스티커-----
종량제 봉투-----
-----.

제17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

-----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1. 대형폐기물: 별표 1의 스티

<u>1의 스티커 판매금액으로 한다.</u> <u>2. 연탄재와 재활용가능자원 및 별표 3에서 정한 품목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수거함에 배출한 폐소형전자제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u> <u>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u>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가격 및 판매수수료는 별표 4에 의한다. ③ (생 략) 제18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 략)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분야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용봉투 등을 무료로 공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	<u>거 판매금액</u> <u>2. 연탄재와 재활용가능자원 및 별표 3에서 정한 품목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수거함에 배출한 폐소형전자제품: 수수료 없음</u> <u>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u> ② ----- <u>봉투의 판매</u>----- ----- 따른다. ③ (생 략) 제18조(수수료의 감면) ① ----- ----- <u>호의 어느 하나</u>----- --- <u>사람</u>----- ----- 제17조에 따른 -----. 1. (현행과 같음) 2. ----- ----- <u>사람</u> ② ----- ----- <u>일반용 봉</u> <u>투</u> ----- -----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최근 기후위기와 그에 따른 기상 변화로 전 세계 인류가 물 부족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물 부족상황을 사전에 대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정의(제2조) ○ 물 절약 시설 보급 확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제3조) ○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제4조) ○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제5조) ○ 물 절약과 관련한 홍보 및 시책의 시행(제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0.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4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규칙 별표 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되어 수도꼭지 및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물 절약 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이 부족한 지역 등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② 물 절약을 위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

제6조(물 절약 홍보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금액 조례 표준(안) 반영 및 조정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규제개선 건의과제 반영 2. 주요내용 ○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조정 - 광고물 설치 시 광고물 종류 및 규격에 따라 부과되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표준조례안 및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금액 일괄 조정(별표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0.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4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5조”를 “제14조”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2.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제16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광고물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하며(단순 지주 산정제외),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수수료의 1.5배를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u>제15조</u>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 <u>제14조</u> -----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1항제2호 관련)

광고물 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2.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시 조례에 신설한 경우에 규정	- 가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 밖의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제1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광고물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하며(단순 지주 산정제외),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수수료의 1.5배를 적용한다.

개 정 안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 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2.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 제16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광고물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하며(단순 지주 산정제외),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수수료의 1.5배를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저출산 극복과 양육활동 전반에 대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적 의무와 예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요금의 감면율을 확대 ○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을 확대·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면율 확대(제5조제1호) -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 ○ 인용법 정비(제5조제7호, 제22조제2호) ○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 변경에 따른 정비(제5조제10호) ○ 감면 대상자 구체화에 따른 정비(제5조제13호) ○ 65세 이상 노인 운전 차량에 대한 감면 신설(제5조제1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0.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5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50을 감면”을 “80을 감면”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탑승,”을 “탑승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아이모아 카드 소유자 이거나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를 지참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

15.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다만,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2제6항”을 “법 제21조의2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 ----- ----- ----- ----- . ---- , ----- ----- ----- -----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에게 대리 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1. ----- ----- ----- ----- ----- 80을 감면---- ----- -----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바.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2. ~ 6. (생 략)

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다만, 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시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한다)인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

8. · 9. (생 략)

10. 인천광역시에서 3자녀 이상 가정에 발급하는 아이모아 카드 제시자 또는 아이모아 카드 발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소지한 자 : 100분의 50을 감면

11. · 12. (생 략)

13.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탑승, 임산부 표시 부착 차량 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을 소지하는 경우 : 100퍼센트 감면

14. (생 략)

<신 설>

2. ~ 6. (현행과 같음)

7.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6호-----

8. · 9. (현행과 같음)

10. 아이모아 카드 소유자 이거나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를 지참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

11. · 12. (현행과 같음)

13. -----
탑승한 -----

14. (현행과 같음)

15.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

제22조의2(보조의 대상) <u>법 제21조의2제6항</u>의 규정에 의해 설치비용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다만,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u> 제22조의2(보조의 대상) <u>법 제21조의2제7항</u>----- ----- -----. 1. ~ 3. (현행과 같음)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모자보건법」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연수구민의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제3조, 제4조) ○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규정(제5조) ○ 난임시술비 지원 및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에 대한 사항(제6조, 제7조) ○ 중복지원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제8조, 제9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0.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5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의 심리적·경제적 부담경감과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인 부부(법률혼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난임극복 지원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3. 난임관련 상담 및 교육
4. 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난임인 사람의 임신·출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난임 관련 상담이나 교육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난임시술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시술(신선 및 동결배아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자궁 내 정자주입술)에 부담한 본인부담 비용
2. 기타 난임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비용과 같은 비급여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난임 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
2.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

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 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및 침구치료 등의 한방난임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방난임치료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병행하지 않는 한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난임부부 극복지원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	1. 제안이유 ○ 민선8기 핵심가치인 소통·통합·안전의 연수 실현을 위한 구청장 자문기구의 필요로, 연수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근거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문회의 설치 및 기능(제2조, 제3조) ○ 구성 및 위원위촉, 의장의 직무 등(제4조, 제5조) ○ 회의운영(제6조) ○ 간사(제7조) ○ 자문단(제8조) ○ 비밀준수의 의무(제9조) ○ 자료협조 요청 등(제10조) ○ 수당 등(제1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0.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5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구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2. 구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4. 구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정혁신 및 구정발전을 위해 구청장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

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당연직위원 5명, 위촉위원 2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회의의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구 본청의 각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된 업무 부서장이나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위촉위원) 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회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 대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임기 종료 시에는 위원의 남은 임기도 함께 만료된다.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이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운영) 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③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자문단을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 소집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간사) 자문회의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8조(자문단)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자문회의의 위원 등 업무 관계자는 임기 중은 물론 임기 만료 후에라도 자문회의의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자료협조 요청 등) ① 자문회의는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자문단 등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특정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 자문회의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촉위원과 지명위원이 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조사연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인사상 인센티브 외에도 지자체별 인센티브(포상금)을 추가하여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도록 추진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근거 조문 개정(제1조, 제2조)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신설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사항 반영(제3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 근거 마련(제4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0.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5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10조제2항”을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을 “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로,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종전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3.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포상 등) 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의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포상은 2022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 -----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 법 제7조제1항----- ----- ----- -----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u><신 설></u>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u><신 설></u> <u><신 설></u>	제10조제1항제2호 ----- ----- 들어야 한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 제4호----- <u><삭 제></u> 3.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포상 등) 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효율적인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 정비 2. 주요내용 ○ 연구활동계획서 제출기한 변경(제12조제1항) : 매년 3월말 → 전년도 12월말 ○ 연구활동계획서 위원회 심사결과 통지(제12조제2항) : 기한 명시 X → 전년도 12월 25일까지 ○ 연구단체에 심사결과 통지(제12조제3항) : 기한 명시 X → 12월 31일까지 통지 단, 추가 제출한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0.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54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을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결과 통지)”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연구단체는” 을 “각 연구단체는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로, “매년 3월 31일까지 의장” 을 “의장” 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 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의 심사결과를 전년도 12월 25일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 중 “해당” 을 “12월 31일까지 해당” 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연구활동계획서 제출) ① <u>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u> ② <u>위원회는 제출된 연구활동계획을 심의하고 의장에게 통보한다.</u> ③ <u>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u> <u><단서 신설></u>	제12조(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결과 통지) ① <u>각 연구단체는 전년도 11월 30일까지 ----- 의장----- .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u> ② <u>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의 심사결과를 전년도 12월 25일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③ ----- 12월 31일까지 해당 ----- .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연수구민들이 생활에 중차대한 영향을 받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연수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토론회 등의 운영 원칙(제3조) ○ 토론회 등 개최를 위한 신청 및 승인 절차(제4조) ○ 토론회 등의 진행과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 ○ 토론회 등의 결론과 반영을 위한 규정(제6조, 제7조) ○ 발표자 및 전문가에 지급하는 실비보상(제8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0.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5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구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세미나·발표회·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진하게 한다.

④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계획서를 수립하여 주제별 소관 상임위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 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시와 장소
2.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
3. 토론회 개요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

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 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진행과 관리) ①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의 총괄 운영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지원한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토론회 등을 개최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반영 등) ① 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 등의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

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론회 등 개최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직 위:
	소 속:	연락처:

행 사 명			
목 적			
일시/장소		참석인원	
기대효과			
☐ 주요내용			
붙임 :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토론회 등 회의록

일 시		장 소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발언자의 발언 요지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비 고	개최사진 첨부		